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
(우)404-14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, 3층 /전화:(032)565-6343/전송:(032)565-6376

문서번호 : 한들 20171108 - 02

시행일자 : 2017. 11. 8.

수 신 :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센터

참 조 : 검암경서동장

선 결			지 시	
접 수	일자	. .	결 재 · 공 람	
	시간	:		
	번호			
	처리과			
	담당자			

제 목 :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 재 공람 통지에 대한 공고문 게재 요청의 건

1. 귀 검암경서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5호, 2017.08.21.)하고 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공람을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붙임자료와 같이 재 공람 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에 검암경서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자료에 대하여 공고문 게재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자료 : 1.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공람 공고문 1부. 끝.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



환지계획(안) 재공람 순서 및 유의 사항

▶ 환지계획(안) 재공람 순서

1. 재공람 공고 통지문 수령(조합에서 등기 개별 통보)
2.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지참하여 조합방문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증명서류 지참)
3. 공람자 명부 서명 또는 날인(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을 경우 공람 불가)
4. 환지계획(안) 열람 및 설명(우리 조합 사무실)
5.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(의견서 양식은 조합사무실에 비치)

▶ 공람 시 유의사항

1. 환지계획도면은 공람용이므로 복사 및 사진촬영이 절대 불가함.
2. 의견서 제출 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반영 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함
3. 대리인이 공람 시 반드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후 공람 가능함
4. 공람 시 본인의 환지예정지만 공람 가능함(타인 토지 공람 불가)
5. 의견서 제출은 재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.
6. 공유로 된 토지는 대표자를 지정한 후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, 공유자 전원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접수함.

※ 환지계획(안) 재공람 시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07일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직인생략

공 램 위 임 장

수임자(대리인)

성 명 :

주 민 번 호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(안) 재공람에 따른 공람권을 본인을 대신하여
상기 수임자(대리인)에게 위임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위임인(조합원)

성 명 :

(인감날인)

지 번 :

첨 부 : 1. 위임인(조합원) 인감증명서 1부
2. 위임인(조합원) 신분증 사본 1부 끝.

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